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6.10.26.(월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국 장	임정환	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민혁진	(02-3145-8277)

연이자율 60%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·이자가 모두 **무효**입니다.

**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
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**

< 주요 내용 >

- ◆ **금융감독원**은 '26.3월부터 초고금리(연이자율 60% 초과)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(「대부업법」 제8조의2)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**무효확인서**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 (573건 발급, '26.10.26.기준)
- ◆ 최근,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**무효확인서**를 첨부하여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**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**이 결정('26.8.10.)된 사례에 이어 법원에서 **무효확인서**를 증거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한 **최초 형사 판결**이 선고('26.9.29.)되었습니다.
- ◆ 이에,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(법률구조공단, 경찰 등)과 **공조**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사·재판 절차에서 **무효확인서**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**더 많은 피해자**를 보다 **신속히 구제**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신청시 유의사항

- ① **무효확인서**는 「대부업법」 개정('25.7.22.) 이후 체결된 **반사회적 대부계약** 피해에 대해 발급하고 있습니다.
- ② **무효확인서** 발급 검토를 위해서는 **대부계약 조건 및 실제 계약 성립 여부** 등을 **확인**할 수 있는 **객관적인 증거자료***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 - * 실제 대출일·상환(예정)일·대출액·상환(예정)액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와 대화내용, 입출금내역 일체
- ③ 불법사금융 피해와 무관하게 **허위로 신청**하는 경우 **형사 처벌** 또는 **민사상 손해배상**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 추진 경과

- **(배경)** '25.11월, 금융감독원은 「대부업법」 개정('25.7.22. 시행)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**‘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’** 발급을 추진*하였습니다.

* '25.11.27. (보도자료) 「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(3차)」

※ 토론회 '[발표③] 불법사금융 대응방안' 중

[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]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*

* (예) '25.7.22.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%를 초과하는 대출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,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'을 통보

- **(시행)** '26.3.5.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「무효확인서 발급 신청」 창구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**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***를 시작하였고

* '26.3.5. (보도자료) 「연 60%가 넘는 고리사채, 원금·이자 모두 무효입니다!」

- 또한 신청과 동시에 신고인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**무효확인서 초동 조치 경고문자*** 발송하여 즉시 추심중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
*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예정 사실,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·이자 모두 무효, 불법 추심 연락 및 상환 요구 중단,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 계좌 거래정지 가능성 등

- **(개편)** '26.8.31. 「**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**」 개편*으로 무효확인서 신청시 다른 금융감독원 피해지원제도**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해자의 **제도간 연계성 및 신고 편의성을 제고**하였습니다.

* '26.8.31. (보도자료) 「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,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」

** 채무자대리인 선임, 소송구조, 전화번호·SNS계정 이용중지, 수사의뢰 등

※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

2 무효확인서 발급 및 효과

□ **(발급)** 금융감독원은 현재('26.10.26.기준) **573건**(채무기준 941건)에 대해서 **무효확인서**를 발급하였습니다.

- 또한 발급된 무효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다 **효과적인 추심 중단**을 위해 **직접**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*에게 **송부**하고 있습니다.

* 불법사금융업자 연락처(전화번호 또는 SNS계정)가 확인되는 건에 한해 직접 통보

□ **(효과)** 최근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 관련 **금융감독원의 무효확인서**를 참고 **지급명령** 또는 증거로 채택 **형사재판**하여 **피해자의 권리구제**에 유리한 결정·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

① 불법사금융 피해자(상품권 판매자)가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불법사금융업자(상품권 구매자)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(약식 독촉절차) 결정

(2026차전641 등)

➔ **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이 금전대부임을 전제로, 피해자(상품권 판매자)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**

② 불법사금융업자(상품권 구매자)가 피해자(상품권 판매자)를 상품권 물품 '사기'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무효확인서를 판단 근거로 활용*하여 사기 무죄 선고

* (판례 발췌) 금융감독원은 ...(중략)..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

(2026고정100059)

➔ **상품권 예약매매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 대부행위**로 판단하고, 상품권 구매(구매대금 송부)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닌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**회수불능 위험을 감수**한 것이라고 판시

3 향후 계획

- **(홍보 강화)**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·경찰청·신용회복위원회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기관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및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 지원 제도에 대한 **대국민 홍보**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**(구조 활성화)** 금융감독원은 **무효확인서**를 대한법률구조공단 **소송대리** 등 법률 지원 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**수사·소송 증거자료**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**(인력·시스템 확충)** 무효확인서 신청 피해신고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위한 **AI분석체계**에 반영하여 향후 민생특사경 업무에 활용하고,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시간 단축을 위한 **전담인력**을 **충원**할 계획입니다.